※ 회원자격 별첨 규정 ※

1. 해당지역이라 함은 광역단위 시·도를 포함한다.
2. 최근이라 함은 인준하는 이사회일을 기준으로 산출한다.
3. 4개의 공연작품 실적 가운데 이사회일 기준 최근 만 1년 이내, 만 2년 이상 자료에 대한 증빙이 필수로 이루어져야 한다.
4. 4작품 중 최소 해당지부 2편, 해당지회 1편 이상의 공연작품이 있어야 하며, 지부가 없는 지회는 해당지회 3편 이상으로 한다.
5. 해당지역 단체가 타 지역에서 공연한 작품은 해당지역으로 본다.
6. **최근** 한 분야에 2편 이상의 공연실적이 있어야 하고 진행, 단순진행, 단순크루 등 전문적 영역이 아닌 부분은 경력에서 제외한다. [2021.10.13. 일부개정]
7. 경력단절 기간은 만 5년까지만 인정한다.
8. 공연작품이라 함은 연극의 일반적 범위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공연으로
   (1) 쇼, 퍼포먼스, 거리공연, 낭독극, 워크숍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.
   (2) 낭독극, 쇼케이스, 단막극, ~~쿼어연극~~의 경우 3편을 1편으로 인정한다.
   (단막극의 경우, 20분이상 50분 이내의 극을 말한다.)
   (3) 신체극과 무용극, 국악극 등의 경우 협회 소속 연극 연출가에 의해 만들어진 공연은 포함한다.
   [2021.10.13. 일부개정]
9. 학생극이라 함은 협회 소속 정단체 극단의 공연이라 하더라도 출연진 절반 이상이 학생일 경우이거나 학교행사를 목적으로 제작된 공연으로 재학생과 함께 공연한 작품을 말한다.
   그러나 입회를 희망하는 자가 만 20세 이상의 학생신분으로 기성 극단에서 활동한 실적은 공연실적으로 간주하되, 고등학생 신분으로 출연한 작품은 공연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.
   [2021.10.13. 일부개정]
10. 공연실적을 산출함에 있어 동일한 작품일지라도 다른 연출 또는 다른 배역일 경우 최소 6개월의 시차가 있을 경우 다른 공연으로 인정한다. ~~또한 학생신분(휴학 포함)으로 기성 극단에서 활동한 실적은 공연실적으로 간주하되, 고등학생 신분으로 출연한 작품은 공연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.~~ [2021.10.13. 일부삭제]
11. 극작분야는 기간에 관계없이 신춘문예를 비롯한 전국 단위의 공모전에 당선했거나 협회 회원이 주축이 된 공연단체에서 3회 이상 공연실적이 있는 자는 회원자격을 갖는다. 단, 공동연출, 단막극의 경우 3작품을 1작품으로 인정한다.
12. 연출 분야는 협회 회원이 주축이 된 공연단체에서 3회 이상 공연실적이 있을 때 회원자격을 갖는다. 단, 공동연출, 단막극의 경우 3작품을 1작품으로 인정한다.
13. **모든 공연작품의 적부판정은 심의위원(소위원회)의 의견을 통해 결정하여 의사회 안건으로 선정된다.** [2021.10.13. 신설]